

농림사업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

-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농림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태 등을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향후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하고,
- 향후 농림사업의 건실한 추진으로 군민에게 신뢰감을 주며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.

1. 조사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
-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

2. 조사기간

- 2001. 2. 6 ~ 2001. 4. 5 (2개월간)

3. 조사대상

- '98. 1. 1 ~ 2000. 12. 31 기간중 추진한 사업비 1,000만원 이상의 농림사업

4. 조사특별위원회 구성

- 구성인원 : 7명
- 위원장 1명 - 간사 1명 - 위원 5명

5. 조사방법

- 각종 농림사업 현황관련서류 징구, 보고, 청취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
- 사안에 따라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현지확인 병행
-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조사
-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

- 조사진행은 공개원칙이나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가능

6. 조사결과 처리

- 조사결과 경미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는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인서와 증빙서를 첨부 군수에게 시정 및 법적 조치 하도록 요구

7. 소요경비 집행

-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변상 및 소요경비 지급

8. 행정사항

- 집행부의 자료요구
 - 제출기일 : 2001. 2. 13일까지 제출요망
 - 요구자료 : 별첨조서 참조
 - '98. 1. 1 ~ 2000. 12. 31 기간중 추진한 사업비 1,000만원 이상의 농림사업
 - 가로양식으로 작성 제출

농 립 사 업 조 서

사 업 명	위 치	사 업 비				사업내용	비고
		계	국	도	군		